

하나IT코리아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DS380]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에 주로 (60%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분산투자 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 손실위험이 높은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IT코리아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수익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하나IT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전략	국내 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IT관련주식)을 주된(60% 이상) 투자 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액티브 운용을 적용하며, 그 결과 비교지수와의 성과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위험관리]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2026년 03월 16일 기준)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8026	1.0000	1.60	1.8057	185	379	583	1,023	2,32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1.3026	0.5000	1.07	1.3058	134	274	422	739	1,683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 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을 포함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 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기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용은 일 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총보수·비용은 합성총보수·비용비용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2026년 03월 16일 기준)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5/03/17 ~ 2026/03/16	2024/03/17 ~ 2026/03/16	2023/03/17 ~ 2026/03/16	2021/03/17 ~ 2026/03/16	(%)				
	펀드ClassC	2023-03-17	161.93	45.89	35.38		35.38				
	비교지수	2023-03-17	223.77	65.50	44.88		44.88				
	수익률 변동성(%)	2023-03-17	33.51	29.84	26.40		26.32				
	* 비교지수 = KOSPI 100%										
	상기 비교지수는 2025년 01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 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6년 02월 25일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_국내,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이왕섭	1979	이사	24	2,713	159.89	50.31	153.18	56.69	10.1년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 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		집합투자재산을 IT관련 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IT 섹터 주식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 주식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며, 전체 시장의 성과와도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청년형장기 집합투자증 권저축)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가입 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 혹은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 추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정세액 증가)될 수 있으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과세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가입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가입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청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입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3년이상 5년이하 ※단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합니다.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합니다)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240만원 한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환절차 및 방법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 또한 가입자가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세액추징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 (예정)일	2026년 07월 31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